

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-462호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
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.

2021년 11월 17일

금융위원회 위원장

- 다 음 -

1. 부수업무 신고 기관 : KB국민은행

2. 부수업무의 신고일 : '21.11.16.

3. 부수업무의 내용

- (대상 고객) KB국민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고객
- (광고 품목) 금융상품 및 비금융 법인·상품
- (업무 방법) 마이데이터 플랫폼 내에서 배너 노출 등의 방법으로 시행

\*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 및 하위규정 (시행령 §11의2④(i), 감독규정 §13의4④(ii))